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 · 평화 · 민주주의 · 인권을 위한 제안

차례

1.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민주거·상가임차인보호·가계부채해결>

| | |
|--|----|
| 정책과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6 |
| 정책과제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 7 |
| 정책과제3.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 | 8 |
| 정책과제4.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10 |

<경제민주화>

| | |
|--|----|
| 정책과제5.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 | 11 |
| 정책과제6.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13 |
| 정책과제7.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14 |
| 정책과제8.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 15 |

<소비자권리 증진>

| | |
|---|----|
| 정책과제9.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16 |
| 정책과제10.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17 |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 | |
|---|----|
|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 18 |
|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 19 |
|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 20 |
|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 21 |
|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22 |

<청년문제와 부담 해소>

| | |
|---|----|
| 정책과제16.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23 |
| 정책과제17.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 24 |
| 정책과제18.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 25 |
| 정책과제19.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 26 |

<복지확대와 공평과세>

| | |
|---|----|
| 정책과제2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 27 |
| 정책과제2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 28 |
| 정책과제22.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29 |
| 정책과제2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 31 |
| 정책과제24.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 32 |
| 정책과제25.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강화 통한 공평과세 실현 | 33 |

II.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 | |
|---|----|
|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 34 |
|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 36 |
|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 37 |
|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 39 |
|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 40 |
|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 41 |
|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 43 |
|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 44 |
| 정책과제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 45 |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 | |
|--|----|
| 정책과제35.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 47 |
| 정책과제36.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49 |
| 정책과제37.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50 |
| 정책과제38.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 51 |
| 정책과제39.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 | 52 |
| 정책과제40.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 53 |

<검찰/법원개혁>

| | |
|---|----|
| 정책과제4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 54 |
| 정책과제4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56 |
| 정책과제43.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57 |

<국정원개혁>

| | |
|--------------------------------|----|
|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59 |
|--------------------------------|----|

<부패방지과 정부투명성 강화>

| | |
|--|----|
|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61 |
| 정책과제46.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63 |
| 정책과제4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64 |
| 정책과제48.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65 |
| 정책과제49.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66 |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정책과제50.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67

정책과제51.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69

<세월호 참사 해결>

정책과제5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71

정책과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도심·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위 과제를 실현해야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3.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2016.02.24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에 달하며,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295조원에 이룸.
-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금리도 2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을뿐더러 대부업자에게는 27.9%라는 특혜금리를 인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고리대를 허용하고 있음.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시키거나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현행 27.9%)을 예외로 둬으로써, 대부업자에게 폭리나 다름없는 특혜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② 신속한 채무조정절차와 1가구 1주택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함.
-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채권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당연면책 제도를 도입, 당연회복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가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③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함.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법적·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함.

④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주택담보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사전예방책'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정책과제4.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 영업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화상경마장의 위치는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바로 옆에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인 전자랜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라 학생들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시설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승인을 갖고 있지 못해 사행산업장 관련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행성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반경 200m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 사행시설 신설·이전·확장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행정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5.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6.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7.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1) 현황과 문제점

-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정책과제8.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정책과제9.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 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 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10.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을 인하함.
-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대략 20%는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 정부·여당은 노동개약과 '쉬운해고'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미 불법적, 편법적 해고 이후 비정규직으로의 재고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해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대량 해고에 대한 제재가 시급히 요구됨.

2) 실천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전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 하되,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법 개정과 더불어 현행법에 대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확대와 점검방식 다양화와 세분화가 요구됨.

② 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상시적인 대량해고가 남용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의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게 함.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됨.
- '쉬운해고'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움. 쟁의행위의 목적을 정리해고 등 경영권과 노동조건이 중첩되는 분야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확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량해고에 제동을 걸 필요 있음.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306)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간제법 개정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②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306)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306)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정부·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306)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306)

정책과제16.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9.5%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단기·임시직 노동자,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됨.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57가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만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청년 일자리·노동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는 등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2) 실천과제

①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특히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타당성을 기하도록 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는 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취업지원정책으로 기초를 바꾸어야 함. 고용보험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적용기간은 늘리는 한편, 구직자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미리 줄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정책과제17.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고등교육비 부담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 수업료 외 기타 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는 등록금에 비해 이러한 기타 비용은 명확한 규정도 산정근거도 없어 각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음.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물론 적립금·이월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기타 비용들을 폐지하거나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정책과제18.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 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 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 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장학재단법」 개정
-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책과제19.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구조화되면서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 주거, 부채,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방향이 확립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청년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청년종합정책 수립

-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문제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하고, 교육, 부채, 문화, 건강, 사회참여 등 사각에 놓이기 쉬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종합정책의 수립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정책과제2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48.5%로 OECD 1위 수준임.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그동안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해도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음.

2) 실천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함.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3)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책과제2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임.
-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임.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 국민연금기금을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여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임. 경기부양,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을 빌려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갚아 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기금의 안정성도 확보 가능함.

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 확대

- 현재 복지인프라는 민간어린이집, 민간병원이 대부분으로 저임금 노동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침해, 불법적 영리추구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의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책과제22.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복지의 발전과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사업' 등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지역복지 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 폐지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¹을 근거로 함. 그러나 이 규정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나 급부가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조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지역복지의 증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함.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조정'이라

1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는 비권력적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3)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책과제2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수준임. 가입자 부담인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에 이룸. 현재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작년 말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흑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지명 8명, 공급자(의료계) 지명 8명, 공익 지명 8명,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입자(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8명이나, 사용자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실천과제

①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개편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의 개편이 필요함

②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대한 대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으나 한시법으로 곧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3)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책과제24.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했으며,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2) 실천과제

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 지원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해야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적 전달체계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정책과제25.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강화 통한 공평과세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1,764개)의 과세소득은 96조 4,000억 원으로 2009년의 74조 5,000억 원에서 29.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실제 세 부담은 0.1%(14조 1,623억 원→14조 1,810억 원) 증가에 그쳤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2014년 4조 9757억 원으로 2009년의 3조 7,171억 원보다 33.8%(1조 2586억 원) 증가함. 이처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세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음
- 상위 1%의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 23.88%로 최고세율인 38%보다 14% 낮음. 공평과세를 위하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실천과제

① 법인세제의 정상화

-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1%, 1,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함.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하도록 함.
-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일몰 도래 시 종료하도록 함.

②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2구간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 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의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기정사실화 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한·미가 새롭게 수립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으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임. 게다가 미국의 핵전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드 배치 및 MD 참여 중단

- 사드는 한반도에는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것임. 국회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 중단을 요구해야 함.

②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 선제공격을 전면화하는 작전계획 수립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함.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 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 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 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 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대외개발원조(ODA)는 유무상으로 나뉘어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음.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맡고 있으나 일 년에 2-3차례 열리는 회의로는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국회 상임위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기준에서 ODA 정책 심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
- 2016년부터 적용되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발전계획(SDGs)의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사업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 등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원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이러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각각에 대해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제대로 다루지지 않고 있음.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한국 정부 역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무상 원조 분야별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에 따라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 있음.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 기업이 지켜야 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세이프가드 초안이 2012년에 이미 작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범 사업만 적용하고 전면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음.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3)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정책과제35.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차이남.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는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을 공고하게 하고 있음.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거대 정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반면, 소수 정당들은 득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가 민심 왜곡이 심각함.
-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는 54석, 20대 국회에는 47석에 불과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함. 비례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됨.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숫자(의원 정수)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국가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은 의원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대표성이 낮아진 것임.

2) 실천과제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함.

②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여야 함.

③ 의원정수 기준 법제화

-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적정 인구수를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함.
- 이로 인해 의원 숫자가 현재의 300명보다 늘어나더라도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의 총 규모를 동결함.

④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공론조사 실시

-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이해관계자인 정당들의 논의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유권자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36.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20세였고 2005년에 개정하면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그 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이 2015년 6월,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함.

2) 실천과제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37.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 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제한 규정 폐지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②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의 정책 비교 평가 허용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③ 후보자 비방죄 폐지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함.

④ 향후, 선거법을 선거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38.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 기준에 따라 2015년 4분기 국고보조금 98억 여 원 가운데 새누리당에 약 48억 9천만 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약 44억 3천만 원, 정의당에 5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음.
- 그러나 보조금 배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함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39.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등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두어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적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
- 이처럼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규제 조항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또한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하여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정당법의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요건을 완화하여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40.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이며,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226건 청원안 가운데, 원안가결된 청원안이 2건, 대안에 반영된 청원안은 6건에 불과함.)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받지 않아 국회의사당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화

- 청원 심사기한(현재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특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국회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원안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② 청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정책과제4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정부 때부터 현재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음. 검찰권을 오·남용해 권력 비판 세력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조작/탈법 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벌임. 또 권력에 종속되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섬.
-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인사권임. 그러나 현재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검찰의 수뇌부가 구성되며, 그렇게 구성된 수뇌부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검찰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케 하고자 함.

2) 실천과제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 선거 >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²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

2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음. 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

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함.
- 기타 관련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권한과 신분보장 >

-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³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둬.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⁴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3 현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는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5.5.26개정)>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총무부, 공안1~2부, 공공형사수사부, 형사1~8부, 특별수사1~4부, 조사1~2부, 강력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1~2부, 방위사업수사부, 공판1~2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각 부의 업무와 각 부 산하에 둘 수 있는 '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

정책과제4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음. 편법 파견으로 검사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임.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지만,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그 중 9명이 임기를 마치고 검찰로 바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⁵.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을 방법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뒷받침밖에 없음.

2) 실천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검사 퇴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2~3년) 검사 임용을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5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8명이 근무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함.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들 모두 검찰로 복귀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4. 8. 21.) 이슈리포트 <확대되고 있는 '청와대 검사파견'> 참조

정책과제43.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대법관들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상반된 구성이었음. 이처럼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법조직역에 치우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추천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도 과도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헌법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의 출신 직역 역시 고위직 판검사 출신으로 획일적임. 이러한 구성으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결정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없음.

2) 실천과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이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함⁶.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 선출(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1인 추천, 판사회의 의견 수렴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 추천(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 1인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함.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함.

③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전에 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을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④ 대법관의 1/3이상은 판사를 제외한 직에 재직된 사람으로 임명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함.

⑤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

-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구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구성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

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정책과제46.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2015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가 37개,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해 심의·조정·협의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512개임. 이러한 정부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계층성, 독단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확대되어 왔음.
- 그런데 정부위원회의 권한이나 영향력 증가에 비해, 많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이 충실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 참여연대가 지난해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및 방청허용 여부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나, 규제심사를 다루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고, 일반 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시민 방청보장

-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회의록은 개별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 회의록의 회의 종료 후 신속한 공개, 시민의 정부위원회 회의 방청기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함.

3)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정책과제4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킨.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과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3)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정책과제48.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이에 따라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해 사면을 실시했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면법 개정 논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좌초되었고,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 논란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됨. 그러다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결국 최태원 등 몇몇 부패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음.
-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조치 뿐임. 사면법을 개정해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통령의 사면법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

- 사면법을 개정해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함.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함.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게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정책과제49.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자원외교를 비롯한 4대강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동 등섬 사업 등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부당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중지를 요구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국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보상금을 마련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정책과제50.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집회의 자유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게 함. 언론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 즉,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자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역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하지만 집시법은 국회, 법원 앞 등 특정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음.
- 실례로, ①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 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②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하였으나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하였고 ③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 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았고, ④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하는 등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는 빈번함.

2) 실천과제

① 전면적 장소 제한 집시법 규정 개정

-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거나 혹은 허용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도록 집시법 11조1호 개정

②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 축소

-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집시법 제12조 개정

3)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정책과제51.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에 이어 2015년 60위로 하락함(국경없는 기자회 2015. 2. 12. 발표).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연례보고서(2015)에서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요인으로 2014년 9월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언사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①)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 품평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정당한 비판과 알권리 제약 및 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①항)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목적’이라는 추가의 구성요건을 두긴 하였으나 인터넷의 속성상 피해확산이 빠르고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거움.
-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

한 것임.

- 또한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법관의 판단에만 맡겨둬으로써 일반 국민으로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옴.
- 모욕죄(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감정, 느낌 등을 통해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임. 하지만, 모욕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문화, 관습, 지위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 법원도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학적인 풍자나 촌철살인의 비평도 모욕죄로 처벌받기도 함.
- 최근에는 집회,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경찰에 대한 감정표출에도 모욕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욕죄의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수백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형사처벌 폐지

- 국가정책, 고위공직자 및 제품 품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형사처벌로 국민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형법 제307조①항, 정보통신망법제70조①항 폐지
- 주관적인 “모욕”감을 근거로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제310조 모욕죄 폐지

3)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정책과제5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였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통과, 예산 대폭 삭감, 활동기간 축소 주장, 특조위원 사퇴 종용 등 온갖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완전한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통과된 법안에도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언제든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19대 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특검법 논의 거부로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확보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선채 인양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채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채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②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


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③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

④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을시 충분한 기간과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발행일 2016. 3. 8.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담당 정책기획실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02-725-7105 jjepark@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인 02-723-4251
